

## 제 5 장 창업휴학

제 25 조(창업휴학) ① 창업휴학은 1회 2학기 이내로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하고,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 단, 1회 연장 신청 시에는 1년간의 창업활동실적,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전공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. 단,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.

③ 창업휴학생의 현장점검은 창업중점교원 또는 창업지원센터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할 수 있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제 26 조(자격요건) ① 창업휴학은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창업활동을 하는 자 중 창업실습 교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(개정 2023.11.10.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창업휴학할 수 있다.(개정 2023.11.10)

1. 대학 및 중앙정부, 공공기관, 대기업의 창업 공모전, 경진대회 입상자
2.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, 대기업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
3. 기타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창업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자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제 27 조(신청서류)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1. 창업휴학 신청서
2. 창업휴학 수행계획서
3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4. 창업실습 교과목이수확인서 또는 창업지원센터장 추천서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5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

제 28 조(창업휴학 승인) ① 창업휴학은 제2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, 매 학기별로 별도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하고,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한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②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무처에 관련 학생의 창업휴학을 의뢰하여야 하며, 교무처에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처리한다.(개정

2022. 3. 1, 23.11.10)

④ 창업 휴학한 학생 가운데 사업의 종료 및 폐지의 사실 또는 제출된 창업휴학 수행계획서 대비 성과가 현격히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방문의 견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휴학 연장을 불허 할 수 있다.